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NEWSLETTER

* 본 뉴스레터는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April, 2024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www.jipyong.com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CONTENTS

목차

법무법인[유] 지평 Shanghai Office

Room 2811, Shanghai Maxdo Center, No.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86-21-5208-2808 Fax. +86-21-5208-2807 Email. shanghai@jipyong.com

Copyright 2013 JIPYONG All Rights reserved.

법무법인(유) 지평의 중국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유) 지평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 법률 뉴스■

2024년 5월 11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부정경쟁방지 잠정규정”(‘잠정규정’)을 발표하고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앞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년 8월 17일 ‘온라인 부정경쟁행위 금지규정(의견초안)’을 발표하였다. 근 3년간의 검토와 개정을 거쳐 ‘잠정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에서 온라인 경영활동에 대한 최초의 규정으로 되었다.

1. 플랫폼 경영자의 플랫폼 내 경쟁행위에 대한 규범관리책임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2. 플랫폼 운영자의 부정경쟁 행위를 규정한다고 하였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01. <경영자독점금지규정 준수지침>
02. <상해 선물거래소의 사업자관리방법(개정판)>
03. <자본항목 외환업무지침(2024년판)>
04. <국가외환관리국 무역외환업무 관리에 관한 통지>

■ 법률 뉴스 ■

2024 년 5 월 11 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부정경쟁방지 잠정규정”(‘잠정규정’)을 발표하고 2024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다. 앞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1 년 8 월 17 일 ‘온라인 부정경쟁행위 금지규정(의견초안)’을 발표하였다. 근 3 년간의 검토와 개정을 거쳐 ‘잠정규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며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에서 온라인 경영활동에 대한 최초의 규정으로 되었다.

‘잠정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을 기반으로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책임을 더욱 강화하였는바, 플랫폼 운영자의 플랫폼 내 경쟁행위에 대한 표준화된 관리의무 및 플랫폼 운영자의 부정경쟁 행위가 포함된다.

1. 플랫폼 경영자의 플랫폼 내 경쟁행위에 대한 규범관리책임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잠정규정’ 제 6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플랫폼 운영자는 플랫폼 내의 경쟁행위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플랫폼 내 운영자가 부정경쟁 방식을 취하여 불법적으로 상품을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필요한 처분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규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의 주소지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기록보존기간은 처분조치일로부터 3 년 이상으로 한다.” ‘잠정규정’ 제 32 조는 “플랫폼 운영자가 본 규정 제 6 조를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저장하지 않거나 플랫폼 내 사업자가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시장관리감독부서에서 전자상거래법 제 80 조와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2. 플랫폼 운영자의 부정경쟁 행위를 규정한다고 하였다.

‘잠정규정’ 제 23 조는 “경쟁우위를 가진 플랫폼 운영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백그라운드 거래데이터, 트래픽 등 정보우위 및 관리규칙을 남용하여 제 3 자의 경영정보를 차단하고 상품 전시 순서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운영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파괴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잠정규정’ 제 24 조는 “플랫폼 운영자는 서비스 계약, 거래규칙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플랫폼 내 운영자의 거래, 거래 가격 및 다른 운영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해서는 아니되며, 주로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1) 플랫폼 내 운영자에게 배타적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2) 상품의 가격, 판매 대상, 판매 지역 또는 판매 시간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가한 경우; (3) 보증금 원천징수, 보조금·우대·데이터 자원 삭감 등 불합리하게 설정한 경우; (4)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을 사용하여 플랫폼 내 사업자의 거래에 기타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한 경우”. 제 25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자는 서비스 계약 및 거래 규칙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과금 기준을 결정해야 하며, 비즈니스 윤리 및 업계 관행을 위반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불합리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해서는 아니된다.”

■ 최신법률법규 (별첨) ■

01. <경영자독점금지규정 준수지침> 
02. <상해 선물거래소의 사업자관리방법(개정판)> 
03. <자본항목 외환업무지침(2024 년판)> 
04. <국가외환관리국 무역외환업무 관리에 관한 통지> 

법무법인[유] 지평